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급기준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
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택배차량의 최대적재량을 2.5톤으로 상향
(안 제3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제3조제1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2. ~ 4. (생 략)

② (생 략)

법」 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상차 일반형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